

보 험 약 관

자유 설계 여행 보험 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는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때로부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알림이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계약의 구분)

이 계약에서 동일모집인에 의해 5인이상의 피보험자가 동시에 가입하는 형태를 일괄가입형이라 하며 그외의 계약형태는 개별가입형이라 합니다.

제 3조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4)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제 3조의 2(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시류, 사진, 도화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1) 회사가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 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5조(대표자의 지정)

(1)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수익자의 있는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3) 일괄가입형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대표자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다른 계약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6조(계약의 무효)

(1)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 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의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계약자가 선택한 여행자금 지급개시일부터 만기 전년도까지 매년 살아있을 때 : 여행자금
2. 만기전 살아있을 때 : 만기보험금
3. 보험기간중 별표2(교통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중 교통재해 이외의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5. 보험기간중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2) 제 1항 제 3호 내지 제 5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4) 제 1항 제 3호 내지 제 5호 및 제 3항의 경우 장해분류표중 제 1급 내지 제 3급의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5)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 제 3호, 제 4호 및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8조(배당금의 지급)

(1)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2) 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증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납입면제를 해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증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고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경우에는 지금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0조(전쟁, 기타 범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범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증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추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 하여 드립니다.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애이즈의 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

-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일괄가입형계약의 경우대표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외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농지)

수의자는 제 7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4조(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5조의 2(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에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약관내출금으로 유예기간중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입(이하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라 합니다)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율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 ③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당해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 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5)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계약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6) 이 보험에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제1항내지 제5항의 경우는 부가되어 있는 특약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제16조(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율 범위내(예정이율이 정기예금이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 제3항, 제3조,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7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급여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8조(보험금등의 지급)

(1) 회사는 제17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시기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드립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3) 제7조 제1항의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배제 아니합니다.

(4)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5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회사는 여행자금 및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⑥ 여행자금, 만기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9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7조 제1항의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를 포함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8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마지막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0조(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보험제목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0조의 2(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을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은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21조(계약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부터 3개월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2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계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제22조의 2(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자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5조(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등을 해 드립니다.

제26조(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7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 급 사 유	1 총	2 총
여 행 사 금	1년 개시형	계약1년 경과후부터 만기전년도까지 매년생존시	매년30만원	매년 60만원
	2년 개시형	계약2년 경과후부터 만기전년도까지 매년생존시	매년35만원	매년 70만원
	3년 개시형	계약3년 경과후부터 만기전년도까지 매년생존시	매년40만원	매년 80만원
	4년 개시형	계약4년 경과후부터 만기전년도까지 매년생존시	매년45만원	매년 90만원
	5년 개시형	계약5년 경과후부터 만기전년도까지 매년생존시	매년50만원	매년100만원
사 망 보 험 목 급	교통재해	교통재해로 사망 및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	3,000 만원	
	일반재해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및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시	2,000 만원	
	일 반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및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시	1,000 만원	
만 기 보 험 금		만기까지 생존시	1,000 만원	
보험료 납입면제		장해분류표중 제2급 ~ 제3급 장해시	차회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주) 여행자금을 매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정기예금 이용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별표 2)

교통재해 보류 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직제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다.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과 또는 신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화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2. 제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카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등
 - 다. 항공기, 선박(돛트, 모타 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등
3. 제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 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 작업장, 체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 3)

제 3 호 분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 30 호, 1979. 1. 1. 시행) 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류 항 목

분류 항 목	분류 번호
1. 철도 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 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 사고	E 820 - E 825
4. 기타 도로 교통기관 사고	E 826 - E 829
5. 수상 교통기관 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 교통기관 사고	E 840 - E 845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 (케이블카, 근돌라 등)	E 846 - 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의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E 850 - E 858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001 내지 799 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E 860 - E 869

분류 항 목	분류 번호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E 870 - E 876
11. 불의의 추락	E 880 - E 888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 - E 899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온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E 900 - E 909 (276.5)
14. 익수, 질식 및 아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김장해는 제외한다.	E 910 - E 915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 916 - E 928 (E 927)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E 930 - E 949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60 - E 969
18. 법적개입(다만 "처벌은 제외한다")	E 970 - E 978 (E 978)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E 980 - E 989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E 990 - E 999
21.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 4)

장해등급 분류표

등급	신체 장해
제 1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쌤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 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 2 부터 7 까지 중의 신체 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의 2 부터 7 까지 중 또는 제 4 급의 5 부터 11 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급	신체장애
제3급	<p>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p> <p>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p> <p>3. 한팔 또는 한팔의 3 대 관절 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p> <p>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 대 관절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한손의 5 손가락을 잃었을 때</p> <p>7.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 손가락을 잃었을 때</p> <p>8. 10 발가락을 잃었을 때</p> <p>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단, 장해 4급은 아래와 같음.

등급	신체 장해
제 4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5. 한팔의 3 대 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6. 한다리의 3 대 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7. 한다리가 영구히 5 cm이상 단축되었을 때8. 한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9.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중 적어도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10. 한손의 5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11.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12. 10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13. 한발의 5 발가락을 잃었을 때

(장해등급분류 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알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ㅂ, ㅂ, ㅍ), 치실음(ㄴ, ㄷ, ㅌ),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ㅇ) 중 3 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 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대시밸(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 + 2b + 2c + d)$ 의 값이 80 대시밸(청력검사 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6.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어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 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 중 2 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 손가락은 끝에서 첫째 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끝에서 둘째 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끝에서 첫째 관절(첫째 손가락은 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끝에서 마지막 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 관절(첫째 손가락은 끝에서 첫째 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끝에서 마지막 관절 또는 _____에서 둘째 관절(첫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 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